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조례안예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업무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총정원을 조정하고,
- 나. 사업소 구조의 체질개선을 통해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소를 5급 팀장체제로 개편 및 수도사업소 권역별 통합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며,
- 다.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 및 소방행정의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신설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정원을 조정하고,
- 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행정국에 안전업무를 총괄할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10명을 증원함.(안 제2조 및 안 별표 3)

나.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8개→5개)하여 4급 사업소로 개편하고,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직급 상향에 따른 4급 6명을 증원함.(안 별표 2 및 별표 3)

다. 사업소 5급 팀장제 개편과 별정직 공무원(2명),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조정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안 별표 2)

라.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조성·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 신설에 따라 4급 1명을 증원함.(안 별표 3)

마. 클린 소방 구현 및 예방적 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안전본부에 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라 4급(소방정) 1명을 증원함.(안 별표 3)

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4. 12. 31까지 연장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66명”을 “5,6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315명”을 “3,325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 율	6% 이내	19% 이내	35% 이내	34% 이내	6%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14% 이내	37% 이내	45% 이내	3%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8% 이내	82% 이상	17% 이내	83% 이상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6% 이내	9% 이내	16% 이내	31% 이내	34% 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 이 상	5급 상 당	6급 상 당	7급 상 당	8급 상 당
비 율	35% 이내	4% 이내	36% 이내	20% 이내	5% 이상

※ 비 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 회 사무 처
		소계	본청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총 계	5,676	5,580					96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2,644	2,572					72
1급	1	1			1		
2급	1	1			1		
2급·3급	1						1
3급	18	18	10	1	4	3	
3급·4급	2	2	2				
4급	126	123	67	4	17	35	3
5급 이하	2,495	2,427					68
별정직 소계	26	21					5
1급 상당	1	1	1				
4급 상당	8	3	3				5
5급 상당 이하	17	17					
연구직 소계	137	137					
연구관	21	21		16		5	
연구사	116	116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3	3		3			
지도사	20	20					
소방공무원 소계	2,255	2,255					
소방정	14	14	6	8			
소방령 이하	2,241	2,241					
기능직 소계	590	571					19

[별표 4]

한 시 정 원(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존속기한	비 고
총 계	계		63		
	일반직	3급	1		
		4급	4		
		5급 이하	57		
	기능직		1		
본 청	일반직	3급	1	2014.12.31	-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4급	4		
		5급 이하	39		
	기능직		1	2014.12.31	
사 업 소	일반직	5급 이하	18	2013.12.31	- 도시철도2호선 건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 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u>5,666명</u> 으로 하며, 다음 각호 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3,315명</u> 2.~4.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 <u>5,676명</u> ----- -----. 1. ----- <u>3,325명</u> 2.~4.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제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별표 3)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정원의 조정 : 5,666명 → 5,676명(10명 증원)

- 일반직 : 10명 증원 (4급 이하)

나. 추계 결과 : 연 675,750천원 요인 발생

○ 일반직 : 675,750천원 (67,575천원×10명)

- ※ 산출기초 : 2013년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일반직 단가 67,575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활용(총액인건비 범위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김 진 용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일반회계	675,750	704,131	733,705	764,520	796,630	3,674,738
	소계	675,750	704,131	733,705	764,520	796,630	3,674,738
재원 조달		675,750	704,131	733,705	764,520	796,630	3,674,738
국 비							
시비	소 계	675,750	704,131	733,705	764,520	796,630	3,674,738
	일반회계	675,750	704,131	733,705	764,520	796,630	3,674,73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13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4.2% 반영 추계